

김해지점부문 원가계산서

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청소용역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 보고서

I. 연간 위탁비 원가계산서

[표 1]

(단위 : 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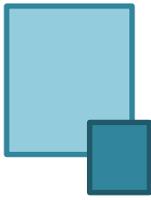
비 목		구 분	단 위	수 량	월간 위탁비	연간 위탁비
순 원 가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개월	12	₩8,215,410	₩98,584,920
		간 접 노 무 비	개월	12	₩0	₩0
		소 계	개월	12	₩8,215,410	₩98,584,920
	경 비	보 험 료	개월	12	₩791,025	₩9,492,300
		복 리 후 생 비	개월	12	₩494,497	₩5,933,964
		소 계	개월	12	₩1,285,522	₩15,426,264
	순 원 가		개월	12	₩9,500,932	₩114,011,184
	일 반 관 리 비		개월	12	₩285,028	₩3,420,336
	이 윤		개월	12	₩374,040	₩4,488,480
총 원 가		개월	12	₩10,160,000	₩121,920,000	
부 가 가 치 세		개월	12	₩1,016,000	₩12,192,000	
합 계		개월	12	₩11,176,000	₩134,112,000	

I-1. 월간 위탁비 원가계산서

[표 1-1]

(단위 : 원/월)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	비 고
순 원 가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8,215,410	80.86	
		간 접 노 무 비	₩0		
		소 계	₩8,215,410		
	경 비	보 험 료	₩791,025	12.65	
		복 리 후 생 비	₩494,497		
		소 계	₩1,285,522		
순 원 가			₩9,500,932	93.51	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			₩285,028	2.81	순원가×3%
이 윤			₩374,040	3.68	(순원가+일반관리비)×3.82%
총 원 가			₩10,160,000	100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1,016,000		총원가×10%
합 계			₩11,176,000		총원가+부가가치세



노무비 집계표

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청소용역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 보고서

II. 노 무 비 집 계 표

[표 2]

(단위 : 원)

비 목	구 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합 계
1. 직접노무비		₩8,215,410	₩0	₩8,215,410
2. 간접노무비(불인정)		₩0	₩0	₩0
합 계		₩8,215,410	₩0	₩8,215,410

1. 직접노무비 산출명세서

[부표 1]

(단위 : 원)

직 종	단 위	인 원	노 무 비	금 액	비 고
미화원(상근)	인	5	₩1,643,082	₩8,215,410	
소 계				₩8,215,410	

주) 청소인원 5인 기준시 적용금액(월기준)

1-1. 1인노무비 산출내역서

[부표 1-1]

(단위 : 원)

구분		단 위	수 량	단 가 (시급)	금 액	비 고
기 본 급	기 본 급	시간	148.75	₩8,018	₩1,192,678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유급휴일수당	시간	30.5	₩8,018	₩244,549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소 계				₩1,437,227	
제 수 당	연 차 수 당	시간	8.75	₩8,018	₩70,158	※(7시간×15일)÷12개월 =8.75시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특별작업수당	%	0.0	₩1,437,227	₩0	※장비운전 특별작업수당 적용
	연장근로수당	시간	0.0	₩12,027	₩0	※단가:시급×15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휴일근로수당	시간	0.933	₩12,027	₩11,221	※단가:시급×15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소 계				₩81,379	
상 여 금	%	0.0	₩119,769	₩0	※단가:기본급÷12개월	
퇴 직 급 여 총 당 금					₩124,476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366일×30일÷12개월
월 평 균 인 건 비					₩1,643,082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 총당금

비고)

■ 실 근로시간

① 수~일요일 : 8시간 - 1시간(휴게시간) = 7시간

■ 기본급 수량산출근거

① 366일 - 52일(월요일) - 52일(화요일) - 5일(수~일요일 중 명절) = 257일
→ 257일 - 2일(9/17~18(근로제외)) = 255일
② (255일÷12개월) × 7시간 = 148.75시간

■ 유급휴일수당 수량산출근거

① (366일÷12개월÷7일) × 7시간 = 30.5시간

■ 휴일근로수당 수량산출근거

① 근로자의 날 및 휴일추가근무
② [1일(근로자의날) + 3일(6/6, 8/15, 10/3)] ÷ 2.5조교대(5인÷2인=2.5조) = 1.6일
→ [1.6일 ÷ 12개월] × 7시간 = 0.933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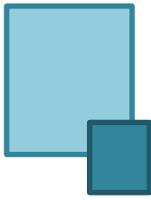
노임단가 임율산출표

[부표 2]

(단위 : 원)

직 종	노임단가	1일급	작업시간	기본시급	적용단가 (최저가)
여미화원	보통인부 (대한건설협회)	₩89,566	8	₩11,195	₩8,018
	단순노무종사원 (중소기업중앙회)	₩64,150	8	₩8,018	

- 주) 1. 통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통계작성 승인기관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 하반기 노임단가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를 비교하여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최저 단가를 산출하였다.
2. 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2015. 10.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5관 1-나 항(단순용역(원가계산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의 인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 적용) 및 행정자치부 비정규직 관련 회계통칙(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의 단순노무 일반용역(일반용역 중 청소, 검침, 시설물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원가계산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함)의 단순노무종사원 적용
3.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기업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014. 12)에 따라 기본급(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통상적 수당(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을 포함한다.



경비 집계표

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청소용역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 보고서

Ⅲ. 경비 집계표

[표 3]

(단위 : 원)

비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보 험 료	식	1	₩791,025	₩791,025	부표 3 참조
복 리 후 생 비	식	1	₩494,497	₩494,497	부표 4 참조
합 계				₩1,285,522	

1. 보험료 산출명세서

[부표 3]

(단위 : 원)

보 험 명	대상금액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보 험 료 대 상 금 액	₩7,593,030	-	-	₩7,593,030	
산 재 보 험 료	₩7,593,030	%	1.7	₩129,082	소요인원 5명에 대한 월 보험료 발생금액
국 민 건 강 보 험 료	₩7,593,030	%	3.035	₩230,448	
장 기 요 양 보 험 료	₩230,448	%	6.55	₩15,094	
국 민 연 금 보 험 료	₩7,593,030	%	4.5	₩341,686	
고 용 보 험 료	₩7,593,030	%	0.9	₩68,337	
임금채권보장보험	₩7,593,030	%	0.08	₩6,074	
석면피해구제분담금	₩7,593,030	%	0.004	₩304	
소 계				₩791,025	

비고)

1. 보험료 대상금액 : 2-1. 보험료 산출명세서 참조

2. 보험료를 산출근거

1) 산재보험료

- ① 기준소득월액(기본급+상여금+제수당) × 17/1,000
-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이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 ③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

2) 국민건강보험료

- ① 기준소득월액(기본급 + 상여금+ 제수당) × 3.035/100
-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①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액 × 6.55/100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4) 국민연금보험료

- ① 기준소득월액(기본급+상여금+제수당) × 45/1,000
- ②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 징수 등)

5) 고용보험료

- ① 기준소득월액(기본급+상여금+제수당) × 9/1,000
-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이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6) 임금채권보장기금

- ① 기준소득월액(기본급+상여금+제수당) × 0.8/1,000
-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 ③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7호

7)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① 기준소득월액(기본급+상여금+제수당) × 0.04/1,000
- ②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의거하여 0.04/1,000 적용

1-1. 월보험료 대상금액 산출명세서

[부표 3-1]

(단위 : 원)

구분	월급여 [A]	퇴직급여 총당금 [B]	대상금액 [C]=[A]-[B]	인원 [D]	금액 [E]=[C]×[D]
여미화원	₩1,643,082	₩124,476	₩1,518,606	5인	₩7,593,030
합계				5인	₩7,593,030

주) 1. 월 보험료 대상금액 = 월급여 - 퇴직급여총당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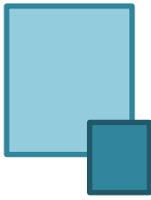
2. 복리후생비 산출명세서

[부표 4]

(단위 : 원)

구 분		수 량	인 원	단 가	금 액	월상각액	비 고
작업복	하복-상·하의	연1회	5인	₩27,000	₩135,000	₩11,250	
	동복-상·하의	연1회	5인	₩34,545	₩172,725	₩14,394	
급식비 (여미회원(상근))		258일	5인	₩4,000	₩5,160,000	₩430,000	
명절상품권		연3회	5인	₩31,082	₩466,230	₩38,853	
소 계						₩494,497	

주) 1. 월발생액 : 단가 × 횟수 × 인원 ÷ 12개월



일반관리비 및 이윤 요율 산출표

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청소용역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 보고서

일반관리비 산출명세표

[부표 5]

(단위 : %)

용역원가			
품명	대상율(%)	적용율(%)	비고
용역원가	5%	3%	※ 본 계상에서는 3%의 요율을 적용하였다.

- ※ 1. 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2015. 10.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였다.
- 2. 계산방식 : 순원가 × 3%
- 3. 일반관리비는 예규 4-4-6에 의거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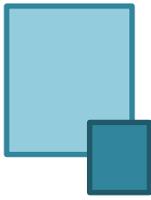
이윤 산출명세표

[부표 6]

(단위 : %)

용역원가			
품명	대상율(%)	적용율(%)	비고
용역원가	10%이내	3.82%	※ 본 계상에서는 3.82%의 요율을 적용하였다.

- ※ 1. 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2015. 10.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였다.
- 2. 계산방식 : (순원가 + 일반관리비) × 3.82%
- 3. 이윤은 예규 4-4-6에 의거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단가조사표

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청소용역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 보고서

